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
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
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6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신설 및 개정되어 고독사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상위법 명시(제1조)
- 고독사 정의를 ‘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’에서 ‘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 하던 사람의 죽음’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 범위 확대(제2조)
- 고독사 정의 변경으로 1인 가구 명시 삭제 (제2조 및 제4조 등)
- 지역 예방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활동가의 활동비(실비) 지급 가능 명시(제8조)

3. 의견제출

○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복지정책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, 서울 중구청), 문의전화 : 3396-5343 FAX: 3396-8729, 전자우편 : neral17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소외·단절된 1인”을 “조례는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외·단절된”으로,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를 “주민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홀로 사는”을 “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”으로, “혼자 임종”을 “임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1인 가구”를 “가구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6호 중 “필요 하다고”를 “필요하다고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1인 가구”를 “가구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”를 “실태조사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1인 가구 중 경제적”을 “경제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인 가구”를 “가구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0호 중 “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”을
“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”으로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수당)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
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<u>조례</u>는 <u>소외·단절된 1인</u>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<u>사회적 고립가구의</u>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1인 가구”란 1명이 단독으로 <u>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.</u> 2.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<u>홀로 사는</u> 사람이 자살, 병사 등의 이유로 <u>혼자</u>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 3. (생 략) 4. “사회적 고립가구”란 가족, 이웃,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	<u>서울특별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 <u>조례</u>는 「<u>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 <u>소외·단절된</u> ----- ----- <u>주민</u>----- ----- -----. 제2조(정의)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1. ----- ----- <u>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</u> ----- ----- <u>임종</u>----- ----- -----. 2. (현행 제3호와 같음) 3. ----- -----

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.

5. (생략)

제3조(책무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정책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(생략)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(거소지가 중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

----- 가구-----
-----.

4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제3조(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
----- 필요하다고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적용범위) -----
----- 가구 -----

-----.

제5조(실태조사) ① -----

----- 실태조사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지원대상) -----

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.

1.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

2.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

3. 4. (생략)

제7조(예방 및 지원 사업)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~ 9. (생략)

10.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③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경제적-----

2. -----
가구 -----

3. 4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예방 및 지원 사업) ① 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-----

② 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수당)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 · 제9조 (생략)

제9조 · 제10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